

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

(3쪽 중 제1쪽)

연결사업연도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--	--	---------	--

1. 연결법인간 출자현황

가. 직접소유(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)

① 연결자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③ 발행주식총수	④자본금 (출자총액)	우리스주조합 등 보유 주식		출자법인(연결모법인) 현황				
				⑤출자주식수	⑥출자금액	⑦법인명	⑧사업자등록번호	⑨출자주식수	⑩출자금액	⑪출자비율

나. 합동소유(둘 이상의 연결법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다른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)

⑫ 연결자법인명	⑬ 사업자등록번호	⑭ 발행주식총수	⑮자본금 (출자총액)	우리스주조합 등 보유 주식		출자법인(연결모법인 및 다른 연결자법인) 현황				
				⑯출자주식수	⑰출자금액	⑱법인명	⑲사업자등록번호	⑳출자주식수	㉑출자금액	㉒출자비율

다. 연쇄소유(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)

㉓ 연결자법인명	㉔ 사업자등록번호	㉕ 발행주식총수	㉖자본금 (출자총액)	우리스주조합 등 보유 주식		출자법인(해당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) 현황				
				㉗출자주식수	㉘출자금액	㉙법인명	㉚사업자등록번호	㉛출자주식수	㉜출자금액	㉝출자비율

2.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

가. 연결법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내역

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법인		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대상 연결법인		③⑧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계(③⑨+④①)	③⑨사적 사용 경비 등 손금불산입액	④①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	④①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
③④법인명	③⑤사업자등록번호	③⑥법인명	③⑦사업자등록번호				
		계					
		계					

나.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액 및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

채 권 자		채 무 자		④⑥채권 총액	④⑦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	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		
④②법인명	④③사업자등록번호	④④법인명	④⑤사업자등록번호			④⑧손금산입액	④⑨한도초과액 상당액	⑤①차감액(④⑧-④⑨)
		채권자별 계						
		채권자별 계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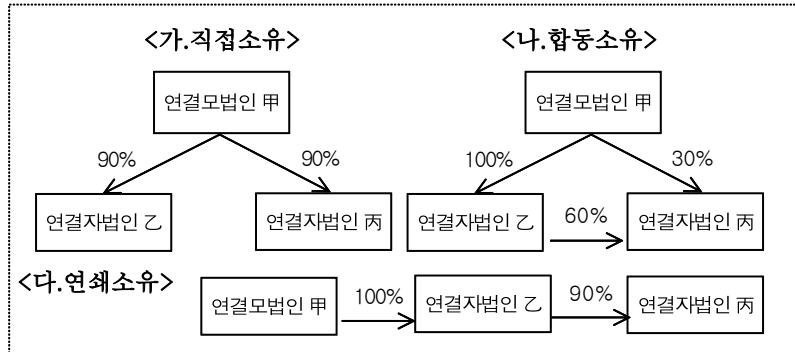
다.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 양도거래 및 양도손익 조정내역

양도법인		양수법인		자산종류			⑤⑧양도가액	⑤⑨장부가액	⑥①양도손실	해당 사업연도 실현이익(손실)		이연대상 자산 양도손익 조정액	
⑤①법인명	⑤②사업자등록번호	⑤③법인명	⑤④사업자등록번호	⑤⑤구분	⑤⑥코드	⑤⑦과목(항목)				⑥②익금산입	⑥③손금산입	⑥④양도소득(⑥①-⑥②)	⑥⑤양도손실(⑥①-⑥③)
		양도법인별 계											
		양도법인별 계											

작성 방법

<1. 연결법인간 출자현황>

1.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에 따른 "가. 직접소유", "나. 합동소유", "다. 연쇄소유"의 유형별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2. ③발행주식총수란: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적습니다.
3.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의 ⑤·⑩·⑰출자주식수란 및 ⑥·⑱·⑳출자금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%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와 그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①·⑫·㉓연결자법인명란 및 ②·⑬·㉔사업자등록번호란: 위 "1"의 유형별 모형에서 연결자법인 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5. 가. 직접소유(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)의 ⑦법인명란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: 위 "1"의 "가"에서 연결모법인 甲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6. 나. 합동소유(둘 이상의 연결법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다른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)의 ⑩법인명란 및 ⑨사업자등록번호란: 위 "1"의 "나"에서 연결모법인 甲 및 연결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7. 다. 연쇄소유(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을 연결지배)의 ⑲법인명란 및 ⑳사업자등록번호란: 위 "1"의 "다"에서 연결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<2.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>

8. ④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란: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금액 총액에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 ㉑사적사용 경비등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9. ④손금산입액란: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.
10. ④한도초과액 상당액란: "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4호서식)의 ⑦한도초과액란 및 ④한도초과액란의 금액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금액(계산식: 한도초과액 ×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÷ 전체 대손충당금)을 적습니다.
11. ⑤구분란 및 ⑥코드란: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.

종류	유형자산 (건축물 제외)	무형자산	채권	금융투자상품	토지·건물	외국 주식· 출자지분
코드	100	101	102	103	104	105

12. ⑤양도가액란 및 ⑥장부가액란: 해당 이연자산의 세무상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⑥양도소득란 및 ⑦양도손실란: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금액을 적습니다.
14. ⑧익금산입란: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금액(⑥)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15. ⑧손금산입란: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손실 금액(⑦)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16. ⑦양도소득란 및 ⑧양도손실란: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